

#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 
Dry Flashback Arresters for Gas
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· 의결 : 2022년 5월 20일

산업통상자원부 승인 : 2022년 6월 14일



##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

**위 원 장**

최 병 학 : 강릉원주대학교 교수

**부위원장**

장 기 현 : 인하대학교 교수

**당 연 직**

황 윤 길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 
곽 채 식 :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

**고압가스분야**

최 병 학 :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
송 성 진 :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 
이 범 석 : 경희대학교 교수  
윤 춘 석 : (주)한울이엔알 대표이사  
안 영 훈 : (주)한양 부사장

**액화석유가스분야**

안 형 환 :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
권 혁 면 :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
천 정 식 : (주)E1 전무  
강 경 수 :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 
이 용 권 : (주)대연 부사장

**도시가스분야**

신 동 일 : 명지대학교 교수  
김 정 훈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  
정 인 철 : (주)에스코 이사  
장 기 현 : 인하대학교 교수

**수소분야**

이 광 원 : 호서대학교 교수  
정 호 영 : 전남대학교 교수  
강 인 용 : 에이치엔파워(주) 대표  
백 운 봉 :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5조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5 및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,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

## KGS Code 제·개정 이력

종목코드번호	KGS AA211 2022
코 드 명	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

제 · 개 정 일 자	내 용
2008. 12. 30.	제 정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-379호)
2009. 5. 15.	개 정(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193호)
2011. 1. 3.	개 정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-489호)
2012. 8. 13.	개 정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-391호)
2014. 11. 17.	개 정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589호)
2016. 11. 23.	개 정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603호)
2017. 9. 29.	개 정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-475호)
2022. 6. 14.	개 정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484호)
	- 이 하 여 백 -



## 목 차

1. 일반사항 .....	1
1.1 적용 범위 .....	1
1.2 기준의 효력 .....	1
1.3 다른 기준의 인정 .....	1
1.3.1 신기술 제품 검사 기준 .....	1
1.4 용어 정의 .....	2
2. 제조시설 기준 .....	2
2.1 제조설비 .....	2
2.2 검사설비 .....	2
3. 제조기술 기준 .....	3
3.1 설계(내용 없음) .....	3
3.2 재료 .....	3
3.2.1 몸통 .....	3
3.2.2 소염소자 등 .....	3
3.3 두께(내용 없음) .....	3
3.4 구조 및 치수 .....	3
3.4.1 구조 .....	3
3.4.2 치수(내용 없음) .....	4
3.5 가공(내용 없음) .....	4
3.6 용접(내용 없음) .....	4
3.7 열처리(내용 없음) .....	4
3.8 성능 .....	4
3.8.1 제품 성능 .....	4
3.8.2 재료 성능(내용 없음) .....	4
3.8.3 작동 성능 .....	4
3.9 표시 .....	5
3.9.1 제품 표시 .....	5
3.9.2 합격 표시 .....	5
4. 검사 기준 .....	6

4.1 검사 종류 .....	6
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	6
4.1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	6
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(내용 없음) .....	6
4.3 검사 항목 .....	6
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	6
4.3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	7
4.4 검사 방법 .....	7
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.....	7
4.4.2 제품에 대한 검사 .....	7
4.5 그 밖의 검사 기준 .....	8
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 .....	8
4.5.2 검사 일부 생략(내용 없음) .....	8
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 .....	8

#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 기준 (Facility/Technical/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Dry Flashback Arresters for Gas)

## 1. 일반사항

### 1.1 적용 범위

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 설비 중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 · 기술 · 검사에 적용한다.

### 1.2 기준의 효력

1.2.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(안건번호 제2022-4호, 2022년 5월 20일)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484호, 2022년 6월 14일)을 얻은 것으로,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1.2.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### 1.3 다른 기준의 인정

#### 1.3.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

규칙 별표12 제4호나목에 따라 역화방지장치가 이 기준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,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역화방지장치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역화방지장치의 제조 및 검사 방법을 그 역화방지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17. 9. 29.>

#### 1.3.1.2 <삭 제> <개정 17. 9. 29.>

표 1.3.1.2 외국 역화방지장치의 인정 규격 및 공인검사기관 <삭 제> <개정 17. 9. 29.>

## 1.4 용어 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**1.4.1** “역화방지장치”란 아세틸렌 수소,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제조 및 사용설비에 부착하는 건식 또는 수봉식(아세틸렌에만 적용한다)의 역화방지장치로서, 상용압력이 0.1 MPa 이하인 것을 말한다.

**1.4.2** “가연성가스”란 아크릴로니트릴 · 아크릴알데히드 · 아세트알데히드 · 아세틸렌 · 암모니아 · 수소 · 황화수소 · 시안화수소 · 일산화탄소 · 이황화탄소 · 메탄 · 염화메탄 · 브롬화메탄 · 에탄 · 염화에탄 · 염화비닐 · 에틸렌 · 산화에틸렌 · 프로판 · 시클로프로판 · 프로필렌 · 산화프로필렌 · 부탄 · 부타디엔 · 부틸렌 · 메틸에테르 · 모노메틸아민 · 디메틸아민 · 트리메틸아민 · 에틸아민 · 벤젠 · 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, 폭발한계(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 한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## 2. 제조시설 기준

### 2.1 제조설비

역화방지장치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술 기준에 따라 역화방지장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(제조하는 역화방지장치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 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- (1) 구명가공기 · 외경절삭기 · 내경절삭기 · 나사전용 가공기 등 공작기계설비
- (2) 단조설비
- (3) 조립설비
- (4) 유량계
- (5) 초음파 세척설비
- (6)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2.2 검사설비

역화방지장치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 기준에 따라 역화방지장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(검사하는 역화방지장치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)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09. 5. 15.>

- (1) 초음파두께측정기 · 나사케이지 · 버니어캘리퍼스 등 두께 측정기
- (2) 내압시험설비
- (3) 기밀시험설비
- (4) 표준이 되는 압력계
- (5) 표준이 되는 온도계

(6) 그 밖에 특정 설비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

### 3. 제조기술 기준

#### 3.1 설계(내용 없음)

#### 3.2 재료

역화방지장치의 재료는 그 역화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# 3.2.1 봄통

3.2.1.1 해당 가스에 침식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서, KS D 5101(구리 및 구리 합금봉)의 단조용 황동 또는 KS D 3564(고압배관용 탄소강관)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진 것으로 한다. <개정 16. 11. 23.>

3.2.1.2 스프링은 KS D 3535(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) 또는 KS D 3556(피아노선)이나 KS D 3510(경강선)으로 내식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16. 11. 23.>

##### 3.2.2 소염소자 등

해당 가스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.

#### 3.3 두께(내용 없음)

#### 3.4 구조 및 치수

역화방지장치는 그 역화방지장치의 안전성 · 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##### 3.4.1 구조

3.4.1.1 역화방지장치의 구조는 소염소자 · 역류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액화석유가스용 및 도시가스용은 방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

3.4.1.2 역화방지장치는 그 다듬질면이 매끈하고 부식 · 흠 · 주름 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4.2 차수(내용 없음)

### 3.5 가공(내용 없음)

### 3.6 용접(내용 없음)

### 3.7 열처리(내용 없음)

## 3.8 성능

역화방지장치는 그 역화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.

### 3.8.1 제품 성능

3.8.1.1 소염소자는 금망, 소결금속, 스틸울, 밸포금속, 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. 다만, 물은 아세틸렌용에만 적용한다.

3.8.1.2 가스가 역화방지장치 안의 소염소자를 통과할 때의 가스압력 손실은 유량 1 m<sup>3</sup>/h에서 8.8 kPa 이하이고, 유량이 3 m<sup>3</sup>/h에서는 19.6 kPa 이하가 되도록 한다.

3.8.1.3 내압시험은 4.9 MPa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 이상변형 및 누출이 없도록 한다.

3.8.1.4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.1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여 누출이 없도록 한다.

### 3.8.2 재료 성능(내용 없음)

### 3.8.3 작동 성능

3.8.3.1 역류방지장치는 0.01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 가스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3.8.1.2 방출장치는 작동압력이 0.3 MPa 이상 0.4 MPa 이하이고, 정지압력은 작동압력의 2/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3.8.1.3 역화방지장치는 역화를 방지한 후 곧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3.8.1.4 역화방지장치는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림 3.8.1.4와 같은 방법으로 3회 이상의 역화방지시험을 실시하여 역화가 확실히 방지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11. 1. 3.>

- (1) 시험가스 : 아세틸렌 · 수소 · 에틸렌용의 경우는 산소 중의 아세틸렌가스가 30 % 이상 50 % 이하인 가스, 도시가스용 · 액화석유가스용의 경우는 산소 중의 액화석유가스가 17 % 이상 23 % 이하인 가스
- (2) 시험압력 : 0.01 MPa 이상 0.1 MPa 이하
- (3) 시험가스의 유량 : 600L/h 이상 1800L/h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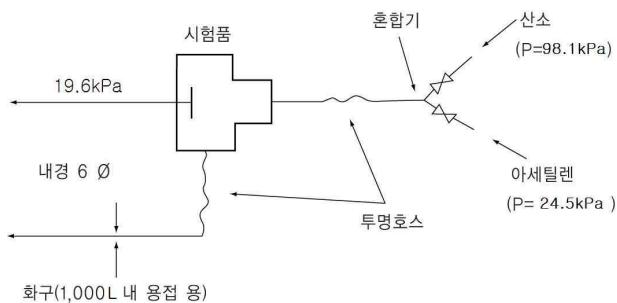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8.1.4 역화방지시험 방법

## 3.9 표시

### 3.9.1 제품 표시

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라 역화방지장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역화방지장치의 몸통 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이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.

- (1)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
- (2) 검사에 합격한 연월
- (3) <삭제 12. 8. 13.>
- (4) <삭제 12. 8. 13.>
- (5) 내압시험압력(기호: TP, 단위: MPa)
- (6)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또는 기호 <개정 12. 8. 13.>
  - (6-1) 아세틸렌가스용: AG
  - (6-2) 압축가스용: PG
  - (6-3) 액화석유가스용: LPG
  - (6-4)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: LT
  - (6-5) 그 밖의 가스용: LG <개정 14. 11. 17.>
- (7) 가스의 흐름 방향 및 최대 유량(m<sup>3</sup>/h)

### 3.9.2 합격 표시

규칙 별표 25 제1호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역화방지장치에는 그림 3.9.2와 같이 **KGS** 자의 각인을 한다. <개정 09. 5. 15.>



크기 : 4mm×7mm(안지름이 25mm를 초과하는 역화방지장치)



크기 : 3mm×5mm(안지름이 25mm 이하인 역화방지장치)

그림 3.9.2 합격 표시

## 4. 검사 기준

### 4.1 검사 종류

역화방지장치의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한다.

#### 4.1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역화방지장치를 제조하고자 하는자가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 실시한다.

#### 4.1.2 제품에 대한 검사

역화방지장치가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다.

##### 4.1.2.1 설계단계 검사(내용 없음)

##### 4.1.2.2 생산단계 검사

역화방지장치가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검사를 실시한다.

## 4.2 공정검사 대상 심사(내용 없음)

## 4.3 검사 항목

### 4.3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역화방지장치 제조사가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2.1에 따른 제조설비 적합 여부
- (2) 2.2에 따른 검사설비 적합 여부

### 4.3.2 제품에 대한 검사

#### 4.3.2.1 설계단계 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3.2.2 생산단계 검사

역화방지장치가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생산단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##### 4.3.2.2.1 제품확인 검사 <개정 09. 5. 15.>

- (1) 4.4.2.2.1(2-1)에 따른 재료 검사
- (2) 4.4.2.2.1(2-2)에 따른 구조 및 치수 검사
- (3) 4.4.2.2.1(2-3)에 따른 성능 검사
- (4) 4.4.2.2.1(2-4)에 따른 표시 검사

## 4.4 검사 방법

### 4.4.1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

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2.1에 따른 제조설비 및 2.2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설비를 모두 구비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### 4.4.2 제품에 대한 검사

제품에 대한 검사는 역화방지장치가 검사 항목별 제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.

#### 4.4.2.1 설계단계 검사(내용 없음)

#### 4.4.2.2 생산단계 검사

##### 4.4.2.2.1 제품확인 검사

###### (1) 샘플링

같은 제조소에서 같은 날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제품은 표 4.4.2.2(1)에서 정한 1조를 형성하는 수에 따라 각각의 같은 표에서 정한 수를 임의로 채취하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.

표 4.4.2.2.1(1) 1조를 형성하는 수에 따른 시료 채취 수량

1조를 형성하는 수	10개 이하	11개 이상 100개 이하	101개 이상 300개 이하	301개 이상 700개 이하	701개 이상
채취수	전수	10개	15개	20개	25개

## (2) 검사 요령 &lt;개정 09. 5. 15.&gt;

## (2-1) 재료 검사

재료 검사는 3.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.

## (2-2) 구조 및 치수 검사

구조 및 치수 검사는 3.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.

## (2-3) 성능 검사

성능 검사는 3.8에 따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.

## (2-4) 표시 검사

제품 표시, 합격 표시 등은 3.9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.

## (3) 합부 판정

(3-1) 역화방지장치가 (2)의 모든 검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.

(3-2) 제품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조에 속하는 전 제품이 합격한 것으로 보며,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조에 속하는 전 제품이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.

## 4.5 그 밖의 검사 기준

### 4.5.1 수입품 검사(내용 없음)

### 4.5.2 검사 일부 생략(내용 없음)

### 4.5.3 불합격 제품 파기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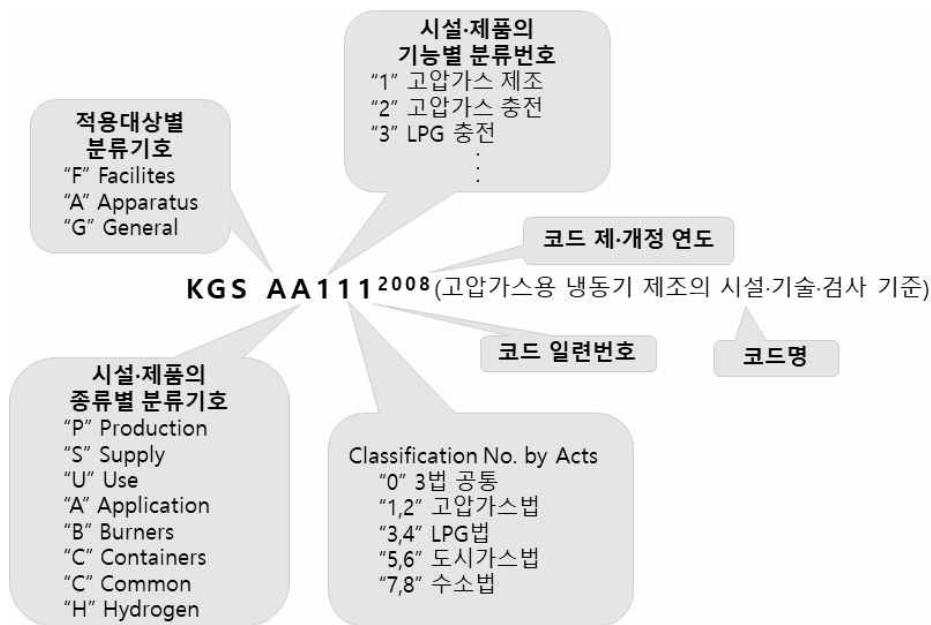
규칙 별표 23제1호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역화방지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파기한다.

4.5.3.1 불합격된 역화방지장치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복원할 수 없도록 한다.

4.5.3.2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 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역화방지장치 제조사가 실시한다.

##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

KGS(Korea Gas Safety)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·기술·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.



분야 및 기호		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		분야 및 기호		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	
제품 (A) (Apparatus)	기구(A) (Appliances)	냉동장치류	1	제조·충전 (P) (Production)	고압가스 제조시설	1	
		배관장치류	2		고압가스 충전시설	2	
		밸브류	3		LP가스 충전시설	3	
		압력조정장치류	4		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	4	
		호스류	5		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	5	
		경보차단장치류	6		도시가스 충전시설	6	
	연소기 (B) (Burners)	기타 기구류	9	판매·공급 (S) (Supply)	고압가스 판매시설	1	
		보일러류	1		LP가스 판매시설	2	
		히터류	2		LP가스 집단공급시설	3	
		레인지류	3		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	4	
		기타 연소기류	9		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	5	
	용기(C) (Containers)	탱크류	1	저장·사용 (U) (Use)	고압가스 저장시설	1	
		실린더류	2		고압가스 사용시설	2	
		캔류	3		LP가스 저장시설	3	
		복합재료 용기류	4		LP가스 사용시설	4	
		기타 용기류	9		도시가스 사용시설	5	
	수소 (H) (Hydrogen)	수소추출기류	1		수소 연료 사용시설	6	
		수전해장치류	2	일반 (G) (General)	기본사항	1	
		연료전지	3		공통사항	2	

KGS AA211 2022



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